

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(안)

의 번	안 호	
--------	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3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'94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므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합니다.

□ 주요골자

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

□ 제안근거

- '94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
- 지방양여금설치조례폐지조례준칙(내무부)

□ 기타참고자료(별첨)

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

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1994. 1. 1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, 세출에 이입한다.